

1. 개정이유

본인신용정보 전송요구권의 전면적 시행('21.8월)에 앞서 '20.2월 개정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하 '마이데이터') 및 본인신용정보관리업 관련 보완필요사항 등을 개선함으로써 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의 안전한 보호 및 효율적 관리가 가능한 환경 조성

2. 주요내용

- 가. 마이데이터 등 데이터 사업자 허가심사 중단시 6개월마다 심사재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재심사 제도 신설(안 제5조)
- 나.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정보주체의 전송요구 및 전송요구 철회 업무의 보조·지원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
- 다.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서비스 안전성 점검 의무를 부과하는 등 행위 규칙 강화(안 제22조의3)
- 라. 소규모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중계기관 활용 허용(안 제22조의3)
- 마. 금융회사 등이 마이데이터 사업자 외 기관에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경우 거점중계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안 제15조, 제39조의2)
- 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범정부 공공분야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 지원 등 신규 업무 수행을 허용(안 제26조의5)
- 사. 금융보안원을 금융감독원 감독·검사 대상에 포함(안 제40조의10)
- 아. 개인정보상시평가제 정보 전송 절차를 간소화(안 제45조의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금융보안원과 협의했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제3호에 따라 심사를 중단한 경우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진행경과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를 재개할 수 있으며, 심사를 중단한 날로부터 매 6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심사 재개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5조제6항제3호 중 “인정되는 경우에는”을 “금융위원회가 인정하여 심사를 중단한 경우”로, “기간”을 “기간(금융위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 중 “인가절차를”을 “인가절차 등을”로 한다.

제5조의2제1항제3호 중 “전송요구권”을 “법 제33조의2제8항에 따른 전송요구권(이하 “전송요구권”라 한다)”으로 한다.

제13조의3제4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제13조의4제4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 철회 등을 보조·지원하는 업무

제15조제1항 중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중계기관 또는 거점중계기관에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수탁자가 위탁규정”을 “위탁규정”으로 한다.

제22조의2제2항 중 “법 제20조제5항”을 “법 제20조제6항”으로, “영 제17조제8항”을 “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6조의5제4항의 기관”을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보안원(이하 “금융보안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제6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제4호를 삭제한다.

6.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 정기적 전송 여부 등을 고의로 변경하는 등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의 지불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7.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신에 대해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유도하거나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의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
8. 본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의 개발 및 주요기능 변경시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해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적합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금융보안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기관” 또는 같은 규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전담반”으로부터 서비스

보안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 제26조의5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분석·조사업무
2.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원활히 전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3.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권의 철회 등을 보조·지원하는 업무
4.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제28조의3제7항 중 “제5항부터 제6항까지”를 “제5항 및 제6항”으로 한다.

제39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들은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받은 경우로서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점중계기관(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및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행위를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금융결제원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4.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및 「새마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관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7. 행정안전부

제41조제1항 중 “법 제38조제1항”을 “법 제38조제2항”으로 한다.

제43조의7 중 “제3항까지에서 “금융위원회”를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 “사항””을 “방법, 사항 및 내용”으로 한다.

제43조의9제1항제3호 중 “채권추심회사 자는 제외한다):”를 “채권추심회사:”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영 제5조제2항제9호부터 제14호까지 및 제19호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중앙회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신용정보처리 관련 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제43조의10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금융보안원

제45조의2제1항제3호 중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사항을”을 “제1호에 따른 전송받은 점검 결과 및 제 2호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로 한다.

제46조제1항 중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결산재무제표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를 “결산재무제표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별표6 제6호 중 “그 밖의 공공정보(특허권,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등)”을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로서 관계 법령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신용정보 등 그 밖의 공공정보(특허권, 법인등록에 관한 정보등)”로 한다.

별표 4의2 제4호 4.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법 제33조의2)의 4.6.2. 고지 사항 등란 다음에 제4호 4.6.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법 제33조의2)의 4.6.3. 정보주체 보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p>4.6.3. 정보주체 보호</p>	<p>▶ 다음의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주체로부터 수집·이용동의를 받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제3자에게 제공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하도록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 -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에 대해서만 전송요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 제3자에게 전송요구를 하지 않도록 강요·요구하거나 제3자에 대한 전송요구를 철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정보를 전송받는 자가 자신에게 전송요구를 철회한다는 이유로 정당한 이유없이 수수료, 위약금 등 금전적, 경제적 대가를 요구하는 행위
--	---

별표 6 제2호(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 및 법인

등록정보	등록기관	등록기준		이용기관
		대상주체	등록시기	
가. 대출, 당좌거래 등 관련 거래 정보				
신용 공여 현황 ¹⁾ (담보, 한도거래, 신용공여기간 등 포함)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 정보 보유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기업 및 법인(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전산수용능력 등을 감안하여 대출금 집중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주채무계열 및 기타 계열기업군 소속기업체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 신용정보회사(신용정보회사는 해당 정보를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회, 영 제2조제18항제7호의 감사인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만 제공할 수 있음)
보험계약대출 현황(대출일자, 대출금액 등 포함)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가계당좌·당좌예금 개설	은행(농·수협 포	○ 해당 기업 및	위와 같음	○ 영 제21조제2항의

및 해지 현황	함)	법인		기관 ○ 신용정보회사
나. 신용카드 관련 거래 정보				
신용카드현황(발급·해지 사실 및 이용·결제금액, 연체정보 포함)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위와 같음	등록사유발생일 부터 7영업일 이내	위와 같음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 사고 발생에 관한 정보, 사고 종결에 관한 보상 및 처리정보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위와 같음	은행(농·수협 포함) 및 여신전문금융회사
다. 금융투자상품 매매 관련				
코넥스소액전용투자계좌 관련 계좌 개설 및 폐쇄 정보 등	투자중개업자	해당 기업체	등록사유발생시	투자중개업자
금융투자상품 발행, 매매 관련 정보 ²⁾ (거래일, 거래내역 등 포함)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해당 등록 정보 보유기관	해당기업 및 법인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	영 제21조제2항의 기관 중 등록기관에 해당하는 자

주 1) 「은행법 시행령」 제1조의3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6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를 준용하여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함

주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의2호의 신기술사업자 및 이와 유사한 기업 및 법인에 대한 정보 중 공공목적으로 관리·활용되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정보에 한함

별표 8 I 제2호제3항 중 “원본정보”를 “가명처리 전 개인신용정보에”로 한다.

별지 제8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8호의2 서식] 정보집합물 결합신청서(제15조의2제1항 관련)

정보집합물 결합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결합의뢰 기관명	기관명		담당자(성명,직함)	
	담당부서		전화번호	
	소재지		이메일 주소	
결합상대 기관명 (복수기재 가능)	기관명			
	담당부서			
	소재지			
결합목적	<i>간략히 서술 (예시: 내부활용, 제3자 제공(이용기관명))</i>			
정보집합물 주요내용 요약	<i>간략히 서술 (예시: 16년 9월 A병원의 진료내역)</i>			
결합 데이터 제공형태	<input type="checkbox"/> 가명정보	이용목적	<input type="checkbox"/> 통계작성 (상업적 목적 포함) <input type="checkbox"/> 연구 (산업적 연구 포함) <input type="checkbox"/> 공익적 기록보존 등	
		결합키	<input type="checkbox"/> 삭제 <input type="checkbox"/> 대체	
	<input type="checkbox"/> 익명정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전문기관명)장 귀하

첨부서류	정보집합물의 데이터 명세서
-------------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조치는 이 규정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남북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② 금리스왑거래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 전남지방우정청 지도실장 관리 및 활동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④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4항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 기준 7등급 이하의 신용등급”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개인신

용평가업을 영위하는 회사는 제외한다)의 개인신용평점기준 하위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으로 한다.

제4조(다른 고시와의 관계) 이 규정 시행 당시 다른 규정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업감독규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
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

⑦ ~ ⑪ (생략)

⑫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
정에 따른 허가 또는 인가절차
를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제5조의2(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대상) ① 영 제5조제1항 단서
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영
제5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말
한다.

1. 2. (생략)

3. 전송요구권의 행사에 따라
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에 신용
정보주체 본인이 직접 금융거
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제
공하는 경우

4. (생략)

② (생략)

제13조의3(겸영업무) ① ~ ③ (생
략)

사를 중단한 경우 -----
----- 기간(금융위
원회가 본문 단서에 따라 소
송이나 조사·검사 등의 절차
가 끝나기 전 심사재개를 결
정한 경우 심사재개시까지의
기간)

⑦ ~ ⑪ (현행과 같음)

⑫ -----
----- 인가절차
등을 -----
-----.

제5조의2(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대상) ① -----

-----.

1. 2. (현행과 같음)

3. 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권(이하 “전송요구
권”라 한다)-----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의3(겸영업무)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영 제11조제6항제7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2. (생략)

<신설>

제13조의4(부수업무) ① ~ ③ (생략)

④ 영 제11조의2제4항제5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 4. (생략)

<신설>

⑤ (생략)

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①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영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② ~ ⑥ (생략)

④ -----

-----.

1. 2. (현행과 같음)

3.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

제13조의4(부수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 4. (현행과 같음)

5.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 철회 등을 보조·지원하는 업무

⑤ (현행과 같음)

제15조(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 ① -----

금융기관(중계기관 또는 거점중계기관에 법 제33조의2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 ⑥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 5.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② (생략)

③ 영 제18조의6제8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

-----.

1. ~ 5. (현행과 같음)

6. 개인신용정보 전송 시 정기적 전송 여부 등을 고의로 변경하는 등 법 제22조의9제6항에 따른 비용의 지불을 고의적으로 회피하는 행위

7. 통상적인 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도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자신에 대해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유도하거나 본인신용정보관리 서비스의 가입 등을 유도하는 행위

8. 본인신용정보관리서비스의 개발 및 주요기능 변경시 서비스 기능 등에 대해 금융보안원으로부터 적합성 심사를 받지 않거나 금융보안원,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3 제1항에 따른 “평가전문기관” 또는 같은 규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자체전담반”으로부터 서비스 보안성에 대해 연 1회 이상 보안취약점 점검을 수행하지 않는 행위

② (현행과 같음)

③ -----

준”이란 신용정보제공·이용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1. ~ 3. (생략)

4. 법 제2조제9호의3에 따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1호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가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에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는 제외한다.

④ (생략)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분석·조사업무를 말한다.

-----.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의5(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영 제21조의2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에 관한 가공·분석·조사업무

2. 「전자정부법」 제2조제6호의 행정정보 등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영 제21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등에 원활히 전송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업무

3. 신용정보주체의 전송요구권의 행사 및 전송요구권의 철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 ① ~

⑥ (생략)

⑦ 제5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 확인, 조사 등을 위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융감독원장이 정한다.

⑧ (생략)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①·② (생략)

<신설>

회 등을 보조·지원하는 업무
4.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제28조의3(데이터전문기관)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5항 및 제6항-----

-----.

⑧ (현행과 같음)

제39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요구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은 전송요구권의 행사를 받은 경우
로써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외의 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거점중계기관(법 제33조의2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는 행위 및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는 행위를 중계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1.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2. 금융결제원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코스콤

4.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중앙회, 각
협동조합의 중앙회 및 「새마
을금고법」 제54조에 따른 새
마을금고중앙회

5.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
33조에 따른 중앙기록관리기
관

6.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정보통신진
흥협회

7. 행정안전부

제41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
보주체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본인정보의 정정을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정정대상정보와 정정
청구사유를 기재하여 서면 또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인터넷홈페
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43조의7(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영 제34조의5제
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금융
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
항”은 별표 8과 같다.

제43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 ①

제41조(신용정보의 정정청구) ①
법 제38조제2항-----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3조의7(가명처리·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
----- 제3항에 따라 금융위원
회----- 방
법, 사항 및 내용--.

제43조의9(손해배상책임의 이행
을 위한 보험 등 가입 기준) ①

소속 중앙회 또는 연합회를 통하여 신용정보처리 관련 기술부문의 주요부분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경우, 중앙회 또는 연합회가 공동 이용 금융회사 전체의 사고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제1호의 금액 이상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면 공동 이용 금융회사는 본호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43조의10(감독·검사 등) -----

--.

1. 2. (현행과 같음)

3. 금융보안원

제45조의2(개인신용정보 활용·

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

1. 2. (현행과 같음)

3. ----- 제1호에 따른
전송받은 점검 결과 및 제 2호

② ~ ⑤ (생략)

제43조의10(감독·검사 등) 영 제36조의2제6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2. (생략)

<신설>

제45조의2(개인신용정보 활용·

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의 확인 및 점수·등급의 표시,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 (이하 “상시평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금융보안원은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사항을 금융감독원장

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46조(회계처리기준등) ① 신용정보회사는 회계처리 및 재무제표 작성에 관하여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회계처리기준을 따라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는 결산재무제표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사업연도말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

하고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46조(회계처리기준등) ① -----
----- 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
--.

② ----- 결산재무제표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

③ (현행과 같음)